

10. 리투아니아(Lithuan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2년
- 현행법 : 1994년(사회보험); 1994년(사회부조); 1999년(연기금), 2004년 시행; 2002년(연금제도); 2003년(개인계좌) 2004년 시행; 2012년(연금개혁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제도
 - ※ 2004년 개인계좌 도입. 근로자의 가입은 임의이나 일단 등록하면 적용제외 선택 불가.
 - 근로자는 월소득의 2% 납부, 사용자는 월급여의 2% 납부(사회보험료부터 이전됨)
 - 정부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2%를 보조금으로 지급함

3. 적용대상

- 보편제도 : 리투아니아 거주자
- 사회보험 : 공공 및 민간분야 근로자, 자영자, 군인, 징집병, 성직자, 집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자
- 사회부조 : 리투아니아 거주 취약계층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 : 월소득의 3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저소득은 법정 월최저임금(400€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선 없음
 - 사회부조 : 보험료 없음
- 자영자
 - 사회보험 : 월 신고소득의 25.3%
 - 사회부조 : 보험료 없음
- 사용자
 - 사회보험 : 월급여의 22.3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저소득은 법정 월최저임금(400€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선 없음

- 사회부조 : 보험료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결손액 보충, 사용자로서 납부
- 사회부조 : 총비용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남성 63세 8개월(2026년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개월씩 점진적 증가)
- 여성 62세 4개월(2026년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4개월씩 점진적 증가)
- 보험료 납부기간 15년 이상자
- 완전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30.5년인 경우 지급(2027년 35년까지 점증)
- 조기연금 : 정상 퇴직연령 5년 전부터 수급 가능, 보험료 납부기간이 30.5년 필요(2027년 35년이 될 때까지 매년 6개월씩 점진적 증가)
- 연기연금 :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 퇴직연령 이후 5년까지 연기 가능
- 노령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에서도 수급 가능하고, 상호 협정이 없는 경우 15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에게 해외 지급 가능

• 노령연금(사회부조)

- 남성 63세 8개월(2026년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개월씩 점진적 증가)
- 여성 62세 4개월(2026년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4개월씩 점진적 증가)
- 사회보험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음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노동능력 상실정도가 45%이상
- 나이에 따라 최소 필요 가입기간 증가
 - 22세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부 2개월 이상
 - 22세부터 37세까지 1년 당 2개월씩 증가
 - 36세부터 63세까지는 1년 당 6개월씩 증가하되, 보험료 납부기간 15년까지 증가
- 완전연금 지급 조건
 - 24세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부 1년 이상
 - 24세부터 29세까지 1년 당 4개월씩 증가

- 30세부터 33세까지 1년 당 6개월씩 증가
- 34세부터 39세까지 1년 당 8개월씩 증가
- 40세부터는 1년 당 12개월씩 증가하되, 보험료 납부기간 30.5년까지 증가
- 장애 및 근로 능력 결정사무소에서 근로 능력 상실 정도 평가
- 장애연금은 정상적인 퇴직연령에 정지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장애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에서도 수급 가능하고, 상호 협정이 없는 경우 15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에게 해외로 지급 가능
- 사회부조급여(소득 및 자산조사)
 - 18세(학생은 24세) 미만으로, 후견인 보호하에 있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 - 24세 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
 - 15년 이상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간호를 제공해온 사람
 - 5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8세까지 양육한, 근로능력 60% 이상 상실한 모친
 -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하거나 실업 등록된 장애인
 - 아이가 고아연금이나 다른 정기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사회부조급여 감액
 - 소득 및 자산 조사 : 가족의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 - 장애 및 근로 능력 결정사무소에서 근로 능력 상실 정도 평가
- 장기간병수당(보편)
 - 영구적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,
 - 중간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아이
 - 60% 이상 근로 능력 상실이 판정된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
 -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노령·장애연금 수급권자이고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
 - 유족연금 수급권자
 - 퇴직연령 도달의 유족배우자
 - 배우자의 사망 전이나 사망 후 5년 이내 또는 정상퇴직연령 도달 전에 장애인으로 판정된 유족 배우자
 - 자녀는 없으나 5년 이상 사망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한 배우자
 - 18세 미만 피부양 자녀(학생은 24세, 아동기 장애 발생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- 유족배우자가 없는 경우, 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또는 사망자의 자녀를 돌보는 동거인
 - 유족배우자 연금은 재혼 시 정지

- 유족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에서도 수급 가능하고, 상호 협정이 없는 경우 15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에게 해외로 지급 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 : 월 연금액은 일반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
 - 일반연금 : 완전연금에 필요한 보험료 납부기간과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의 비율에 기본연금월액을 곱하여 산정
 - 기본연금월액 : 152.92€
 - 개인연금 : 가입자의 적립된 연금점수 합계에 연금점수 가치를 곱하여 산정
 - 연금점수 : 국가 월평균임금의 12배 소득에 대해 획득(단, 부분 연금점수 취득 가능), 연간 최대 5점의 연금점수 획득 가능
 - 국가 월평균임금 : 876.40€
 - 연금점수가치 : 3.27€
 - 조기연금 : 정상 퇴직연령 전 조기연금 청구 매월당 0.4%씩 감액
 - 연기연금 : 정상 퇴직연령 후 연기된 매해 8%씩 증가
 - 연금액 조정 : 기본연금가치와 연금점수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
- 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급여는 기본연금월액의 0.9배
 - 기본연금월액은 152.92€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월 연금액은 일반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
 - 일반연금 : 완전연금에 필요한 보험료 납부기간과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의 비율에 기본연금월액 및 근로능력 상실 지수를 곱하여 산정
 - 기본연금월액 : 152.92€
 - 개인연금 : 가입자의 적립된 연금점수 합계에 연금점수 가치 및 근로능력 상실 지수(근로 능력 상실 판정에 따라 다양함)를 곱하여 산정
 - 연금점수 : 국가 월평균임금의 12배 소득에 대해 획득(단, 부분 연금점수 취득 가능), 연간 최대 5점의 연금점수 획득 가능
 - 국가 월평균임금 : 876.40€
 - 연금점수가치 : 3.27€
 - 장애연금액 하한, 상한 없음
 - 연금액 조정 : 기본연금가치와 연금점수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
- 사회부조급여(소득 및 자산조사)
 - 첫 번째 가족 구성을 위해서는, 개인당 국가 지원 월소득과 단독 거주자

1인당 실제 소득 간 차액의 100%를 월 급여 수준으로 지급, 두 번째 가족 구성을 위해서는 80%, 세 번째 이후 가족구성원을 위해서는 70%

- 국가 지원 월소득 : 122€
- 주택, 난방, 상하수도 비용을 위해서 일시금 지급
- 장기간병수당(보편)
 - 특별한 간병 수요가 인정되면 목표 보상 기초의 2.5배 지급
 -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아이와 75% 이상 근로 능력 상실 판정된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목표 보상 기초의 1배 지급
 - 중간 정도 장애가 있는 아이, 근로 능력 상실이 60~70%로 판정된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,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목표 보상 기초의 0.5배 지급
 - 목표 보상 기초 : 112€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 연금 : 유족 기본연금 지급
 - 유족기본연금 : 월 22.46€
 - 급여 조정 : 유족 기본연금 가치의 변동에 기초하여 조정
 - 고아연금(사회보험)
 - 각 고아에게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노령 및 장애연금액의 50% 지급
 - 완전고아인 경우 100% 지급
 - 고아연금 총액 상한은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연금액의 100%
 - 급여 조정 : 기본연금 가치 및 연금점수 가치의 변동에 기초하여 조정

7. 관리운영기관

○ 사회보장노동부 (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r)

- <http://www.socmin.lt>
- 사회보험제도 감독

○ 국가사회보험기금위원회 (State Social Insurance Fund Board)

- <http://www.sodra.lt>
- 사회보험제도 운영, 보험료 징수, 급여 지급